

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 경 의원
- 의안번호 : 제2809호
-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20일

2. 제 안 이 유

- 세계보건기구(WTO)가 권고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은 9m²이나 서울시는 그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.38m²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 산림청의 전국 생활권 도시림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서울시의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되므로 도심 녹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.
- 이에 서울시가 외곽에 위치하는 중 대규모의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의무를 명시화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서울시의 관내 생활공원 녹지를 비롯한 산림 및 자연녹지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 또는 노력 의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4조제2항)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」 ,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
보전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도 첨부)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재효)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외곽에 위치하는 산림 및 자연녹지들과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생활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연결해 그린인프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녹화계획 기본방향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세부적으로 제2조(적용범위)에서는 ‘녹지1)의 보전 및 확충’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(도시녹화계획)에서는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따라서 안 제4조제2항과 같이 조성된 녹지2) 간 연결성 향상을 통해 녹지들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녹지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생활권 녹지율이 낮은 서울시 특성에 미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-
- 1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
5. “녹지”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,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.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
6. "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가. 도로·철도·항만·공항·주차장 등 교통시설
나. **광장·공원·녹지** 등 공간시설
다. ~ 사. (생략)
- 2)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35조
1. 완충녹지: 대기오염, 소음, 진동, 악취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
2. 경관녹지: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·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
3. 연결녹지: 도시 안의 공원, 하천,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·휴식을 제공하는 선형(線型)의 녹지